

의료 技士法 개정 反對결의문 채택

치협은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치과 기공물은 구강내에 영구히 장착되며 인체에 지속적으로 생물학적, 의학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공물제작의 전 과정이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필요로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치과기공소의 기공소 단독개설조항의 법률적 보완을 위한 법률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한 의료기사수습제도폐지와 관련, 이론상의 전문교육도 우선되나 실제 임상에서의 교육여건에 부족함이 있으므로 우수한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수습기관존속이 필요하므로 동제도 폐지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상근 보험위원회 도입

의료보험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치과의사 상근보험위원회를 도입키로 결의했다.

安相奎보험이사는 이와 관련 총회에 미리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보험재정이 3조원에 달하고 치과보험 진료비가 1천 7백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치과의료보험에는 치과의료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치협의 보험대처방법은 실효면에서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그 해결 방안으로서 상근보험위원회의 도입이 가장 쉽고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安보험이사는 상근보험위원은 보험이사의 교체와 관계없이 의료보험과 관련된 기획, 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대외적인 활동도 맡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구강보건선언문 발표

『구강질환초기치료 평생건강 약속받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이번 총회에서 발표한 치협은 국민구강보건향상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고 부정의료행위자 척결과 심신장애자를 위한 구강 보건진료센터설립등

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그동안 치협에서 대 국민구강보건향상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장애자구강보건진료센터 설립 및 이에따른 재원충당을 위한 덴탈 Seal 발행도 총회에서 승인되어 그 제작이 연내에 이루어지게 됐다.

다음은 국민구강보건선언문 5개항의 내용이다.

- 一. 우리는 전신건강이 구강건강에서 기인되며 이는 평생건강을 약속하는 척도임을 확신하면서 모든 국민이 구강질환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때까지 구강질환에 대한 조기치료운동을 범사회적으로 전개해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구강질환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
- 一. 우리는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사회적 암적인 존재인 부정의료행위자 및 부정기공물제작업자들을 발본색원하여 국민 어느누구도 이들로부터 의료피해를 받는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一. 우리는 그동안 사회에서 무관심해온 심신장애자들에게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이들을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가도록 이들을 위한 전문치과의료기관을 건립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질 좋은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一. 우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사회건강을 진단, 처치하는 의료인임을 자각하면서 민간단체로서는 최초로 매월 2일을 「승용차 안타는 날(無車日)」로 정하여 범국민운동으로 확대, 전개시켜 나감으로써 점차 심각해져가는 교통난해소에 앞장서 나가도록 다시한번 힘써 나갈 것이다.
- 一. 우리는 입안의 28개 치아가 서로 자기의 위치를 지켜 가며 조화롭게 그 기능을 다해 나가듯이 사회 각계 각층 역시 서로 믿고 사랑하며 화합해 나갈 것을 기원하면서 사람들마다 서로 청결하고 고운 입으로 아름다운 말만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숭선수범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덕담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 범죄없는 사회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갈 것을 다짐한다.

대의원수 200명으로 고정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회원수에 따라 대의원의 수가 점차 비례적으로 늘어나 대의원총회운영등 회무수행에 애로 사항이 클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치협에서는 대의원 수를 200명선에서 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당연직대의원인 각시도지부장 및 총무이사 34명을 제외한 1백 66명의 대의원이 회원비례로 선출되어 정기 및 임시대의원총회에 참가하게 된다.

그러나 齒協은 현재의 대의원의 임기가 92년까지 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연금제도 실시키로

회원복지대책, 의료사고 분쟁처리와 대출금지원등 치과의사들의 시름을 한결 덜어줄 수 있는 다목적 성격의 치과의사연금제도안이 마련되었다. 이에따라 齒協은 「치과의사연금관리 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통과된 치과의사연금제도안에 따르면 연금 기금은 전회원이 매월 3만원씩 부담하는 기본부담액과 노후에 실질적 보장혜택을 위해 연금액의 증가가 필요할때 회원들이 선택적으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액 및 예치금에 의해 조성되며 연금급여대상은 노후보장의 경우 부담금액을 5년이상 납부한 60세이상의 회원들이며 그 수령은 회원의 사망에 관계없이 10년간 일정액이 지급되는 확정연금과, 종신토록 지급되며 회원이 10년간은 확정지급되는 종신연금으로 나눠진다.

연금수령액은 기본부담액납입시 확정연금 5년경과 회원은 34만 2천원, 20년경과회원은 4백85만 2천원, 30년 경과회원은 2천 22만 9천원이다.

또 사고보상의 경우에는 기본부담액납부시 재해입원에서 교통재해사망에 이르기까지 최저 2만 2천 8백원(4일입원)에서 최고 2천 2백 83만원+해당회원의 적립금이 지급된다.

한편 신규개업 또는 기계설비교체시에는 최고 3천만원까지, 기계진급자금 소요시에는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으며 이와함께 기본부담금의 3%를 운

영기금으로 조성, 회원경조시 또는 의료분쟁발생시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종합학술대회 3년마다 개최키로

종합학술 대회가 앞으로 3년에 한번씩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르면 현행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격년제로 치루던 종합학술대회의 개최주기를 변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3년에 한번은 齒協주관의 종합학술대회를, 중간년도 2년은 각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11월 창립70주년기념 제40차 종합학술대회가 치뤄진후 제41차 종합학술대회는 91년도에 가서 치뤄지게 된다.

齒協은 그동안 학술대회준비위원회, 학술위원회등에서 종합학술대회개최주기와 개최방법등에 대해 논의해 오다가 이번 총회에 매년 개최하는 방안과 3년에 한번 개최하는 방안을 상정했었다.

새로운 치협감사에 趙畿鎬氏 選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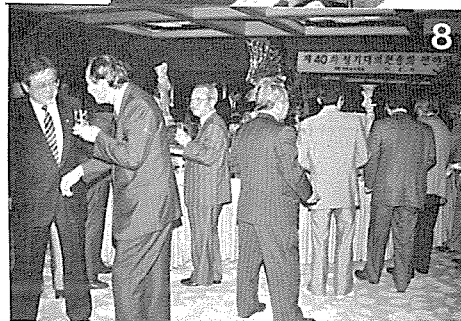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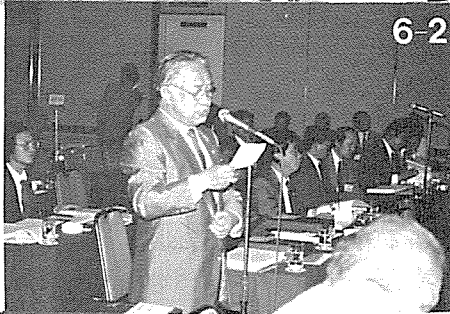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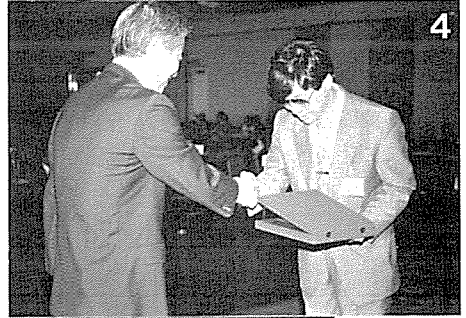
이제까지 치협의 감사로 있던 金瑞東박사가 새로운 사무총장직에 취임하게 됨에 따라 공석이된 감사에 현재 대한구강병리학회 회장으로 있는 趙畿鎬氏가 새로이 선출됐다.



지난 4월 20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비치호텔에서 열 <조기호 신임감사> 린 4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金瑞東 前감사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감사보궐선거를 실시하여 趙畿鎬씨를 만장일치로 신임감사로 선출했다.

신임 趙畿鎬감사는 61년 서울치대를 졸업(15회)하고 68년 육군치과관외관소령으로 예편한 후 경희치대 및 원광대치대 외래교수로 재직하면서 구강병리학을 강의해 왔다.

74년 서울齒중구회 부회장을 거쳐 78년부터 82년까지 4년동안 치협 자재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구강병리학회 회장으로 있다.



- ① 정기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의안을 심의하고 있는 시·도 지부장회의
- ②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선언하는 李鍾律총무이사
- ③ 전 공보이사 明魯哲박사에게 “치과의료문화상”이 수여됐다.
- ④ 감사패를 수여받는 吳德根제주시부장, 이밖에 대전, 충북, 경남지부에도 감사패가 각각 수여됐다.
- ⑤ 총회석상에서의 집행부 임원진
- ⑥ 치협만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의원의 열띤 질의가 연이어졌다.
- ⑦ 대부분의 대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협회 및 지부에서 상정한 의안을 항목별로 심의하고 있다.
- ⑧ 전야제에 참석한 대의원이 삼삼 오오 담소하고 있다.